

— 구미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4년 11월 30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4년 12월 7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12월 22일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정보실장 김 인 중

나.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04.06.01)됨에 따라 동법 제75조 규정
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정하여 자문을 받아 재
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제2조)

-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나. 자문단은 다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10~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함(제3조)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다.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제4조)

라. 자문단은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5일까지 통지하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제6조)

마. 자문단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참고사항

○ 경상북도 치수방재과-7856(2004.09.16)호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조 택 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